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 및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「공항시설법」까지 확대하고,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'2024년 5월 31일'에서 '2027년 5월 31일'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, 「공항시설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면제/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면제/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항공법령상”을 “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항공안전법」”을 “「항공안전법」 및 「공항시설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항공안전법」”을 “「항공안전법」 및 「공항시설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항공법령”을 “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항공법령상”을 각각 “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항공법령”을 “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<u>항공법령상</u>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/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「<u>항공안전법</u>」의 근거에 의해 면제/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「<u>항공안전법</u>」 및 「<u>공항시설법</u>」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본원칙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조에 따른 면제/예외 인정 조항은 「<u>항공안전법</u>」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,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「<u>항공안전법</u>」 및 「<u>공항시설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처리기준) 소관 과장은 면제/예외 인정을 함에 있어 다음</p>	<p>제4조(처리기준) ----- -----</p>

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항공법령 등 제반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것

3. 4. (생략)

제5조(면제/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) ① 소관 과장은 면제/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/예외 인정 신청 서류 등이 항공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/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, 위험(Risk)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(Risk Assessment)(이하 “위험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면제/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) ① -----

-----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-----

-----.

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면제/예외 인정 시 불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8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항공 및 공항
관련 법령-----
-----.

제8조(유효기간) -----

-- 2027년 5월 31일-----
-----.